

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

제64조 (학위기)에 의거하여 별지 개정	
현 행	개 정
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목회학석사(M.Div.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 년 월 일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(인) 위 증명에 의하여 목회학석사(M.Div.)의 학위를 수여함. 대신대학교 총장 (인) 학위등록번호:	<u>석(목)</u>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<u>신학대학원 신학과(전공)목회학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</u>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<u>목회학석사(영문학위명)</u>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<u>이를 인정함.</u> 년 월 일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<u>(학위) 000 (인)</u> <u>위의 인정에 의하여 목회학석사 학위를 수여함.</u> 대신대학교 총장 <u>(학위) 000 (인)</u> 학위등록번호: <u>대신대 0000석(목)000호</u>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 시행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